

광주전남 정책Brief

GJERI ISSUE PAPER

2023/7.13.

GJERI POLICY BRIEF | No. 267 · 발행처 | 광주전남연구원 · 발행인 | 광주전남연구원장 · 편집위원회 | 조창완, 김현철 ※ 내용문의 : 신동훈(dhshin@gjeri.kr)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남의 균형발전 추진 방향

신동훈 책임연구위원

주요내용

- '23년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시대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됨.
 - 이번 통합법률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련된 계획과 과제를 통합·연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음.
 -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에서 교육자치 원칙 훼손, 귀족학교 난립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련 조항(36조)이 삭제되고 통합법률안이 통과됨.
 -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7월 10일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
- 본 고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안)」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남의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전남도 균형발전 추진 방향

-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기반한 새로운 전남도의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빠른 대응 전략 수립**
 -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전략 추진
 - 기존지역혁신협의회를 대신해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
 -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을 갖는 전남도와 시·군 차원의 균형발전 사업의 발굴·추진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남형 기회발전특구 모델 발굴**
 - 전남만의 특화된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기업 발굴,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후방 연계사업의 체계적 준비
 - 에너지국가산단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기반, 전남 서남권 해양풍력발전 산업 기반,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회발전특구계획 수립·지정 추진
 -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해 오는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남형 기업 지원정책 마련
 - 지역혁신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책 강화

1. 들어가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이 동법 시행령과 함께 7월 10일 시행됨1).

- » 통합법률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분산적 기능 수행에 따른 상호연계 미흡 보완, 효과적·체계적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련된 계획과 과제를 통합·연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²⁾.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
 - 이후 지난 6월 9일, 통합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음³⁾.
- »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의 지정 근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에서 교육자치 원칙 훼손, 귀족학교 난립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련 조항(36조)이 삭제되고 법안이 통과됨.
 - * 교육자유특구 조항은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임.
- »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됨.
 - 7월 10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공약 간 연계 및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됨(산업통상자원부 등 보도자료, 2023.7.10.).
 -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극복 및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7.9.).
- » 본 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안)」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남의 균형발전 추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9일 입법예고됨.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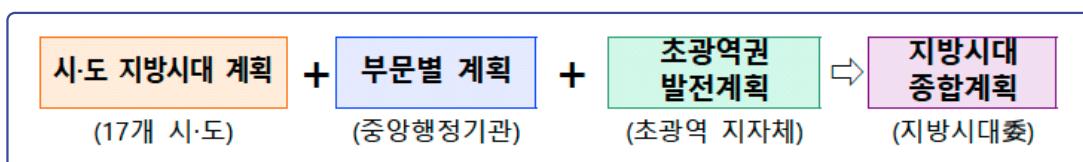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안이유의 내용을 정리함.

2.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통합법률의 주요 내용⁴⁾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부처별 부문별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6조 제2항).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6.,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예비수립지침」, p.1.

<그림 1>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성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6조 제3항).
 - *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함(제6조 제4항).

» 시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제1항).
- 시·도 계획에는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시·도별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7조 제2항).
- 또한 시·도 지사는 시·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7조 제3항).
-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7조 제4항).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여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야 함(제8조 제1항).
-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시·도 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을 고려해야 하며 (제8조 제2항),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8조 제3항).
- 부문별 계획,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8조 제4항).

5대 전략	21개 핵심과제	주관부처
I.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1.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행안부
	2.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3.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행안부
	4.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행안부
	5. 지방의 책임성 확보	행안부
II.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개혁	1.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교육부
	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교육부·증기부
	3.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행안부
III.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1.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산업부
	2.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국토부
	3.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산업부·고용부
	4.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5.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과기부·산업부·행안부
	6.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증기부
IV.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1.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산업부·증기부
	2.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문화부·해수부
	3.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국토부·해수부
	4.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농림부·해수부
V. 기회를 만드는 공정한 환경조성	1.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행안부·농림부·국토부
	2. 삶의 질 높이는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복지부·행안부
	3.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환경부·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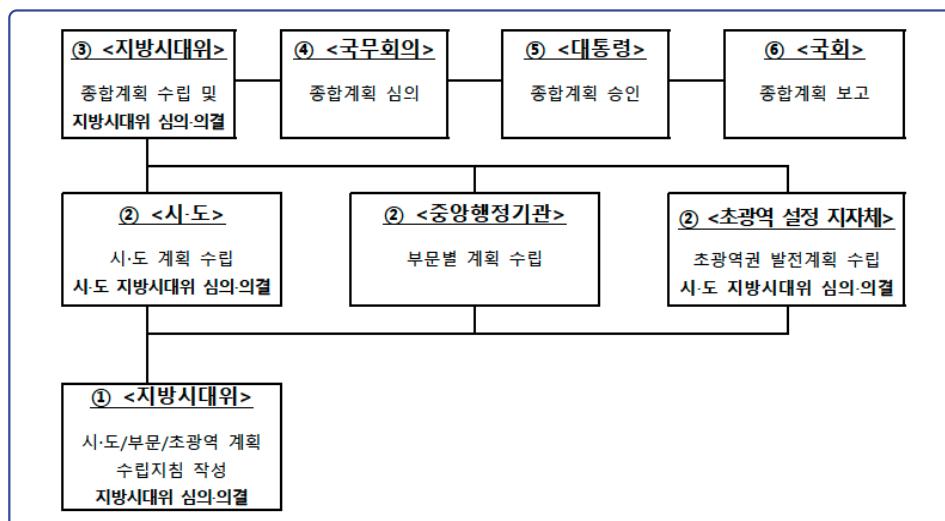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6.,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예비수립지침」, p.5.

<그림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 21개 핵심과제

»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제9조 제1항).
-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 초광역권산업 육성 또는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투자재원 조달,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9조 제2항).

-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9조 제3항),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9조 제4항).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6.,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예비수립지침」, p.4.

<그림 3>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제23조)

-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정·고시되는 지역(제2조 제13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행정 구역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제23조 제1항).
 -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
-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함(제23조 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제23조 제3항).
-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23조 제4항),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23조 제5항).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제62조~제73조)

-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두며(제62조 제1항),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7월 10일 공식 출범함.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 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 협약의 체결 및 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짐(제63조).
- *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두며(제68조 제1항), 지방 시대기획단의 업무 지원 및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제69조 제1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제70조 제1항),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제71조 제1항~제2항)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함.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전년도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제73조).
-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제67조 제1항)와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제67조 제3항)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해야 함(제67조 제2항)

» 이외에도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제24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제25조), 혁신도시의 지정,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등의 조항이 포함됨 (제24조~제32조).

●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5)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제5조~제10조)

-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함.
-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부문별 계획의 경우 관계 중앙부처의 장, 시·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거쳐 부문별 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각각 작성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함.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참고하여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관계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는 각각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제11조~제12조)

-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송부해야 함.
-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제20조~제22조)

-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기회발전특구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통합법률 제23조 제2항 후단의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 포함되며,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시대 위원회의 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방식, 시·도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9조부터 안 제67조).

- 지방시대기획단 업무 수행,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임명 방식 및 임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 및 안 제69조).

3. 전남도 균형발전 추진 방향

» 통합법률과 시행령에 기반한 전남도의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빠른 대응 전략 수립

- 7월 10일 통합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 및 22개 시·군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함.

-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는 기존의 지역혁신협의회를 대신해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군 지방시대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23년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5대 전략 21개 핵심과제 등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을 갖는 전남도와 시·군 차원의 균형발전 사업의 발굴을 통한 전라남도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추진이 필요함.

»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남형 기회발전특구 모델 발굴

-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타 지역과의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만의 특화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기업 발굴,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후방 연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대 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구 등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선정, 지정기준, 투자유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 민간투자 수요를 다른 기회발전특구보다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고, 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기회 발전특구 지정 추진
- 에너지국가산단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 기반, 전남 서남권에는 해양풍력 발전 산업 기반,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
-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해 오는 투자기업에게는 확실한 성장토대를 마련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전남형 기업 지원정책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책 강화

| 참고문헌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6.,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 예비수립지침」
- »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7.10.,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에서 출범... 지방분권지역균형 이끈다.”
- » 행정안전부, 2023.7.9., 보도자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061-931-9333 | dhshin@gjeri.kr



광주전남연구원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58217 전남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8층
전화 061-931-9300 팩스 061-931-9393 홈페이지 www.gjeri.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로서 광주전남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